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04 제안연월일: 2024. 9. .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1776	정부	'24.07.16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08.26)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4.08.28)
	2201837	정연욱의원 등 10인	'24.07.17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08.26)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40828)
	2201885	김승수의원 등 12인	'24.07.17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08.26)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시소위원회('24.08.28)
	2201903	정연욱의원 등 11인	'24.07.18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08.26)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4082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5.)는 위 4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역 량 등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전담여행사로 하여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규모가 증가하며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 · 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관광객 유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 ·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관광단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함(안 제48조, 제52조 등).
- 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70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 · 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 4. 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전담여행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지정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제54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지정취소 및 면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53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 정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전단 중 "관광지등"을 "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시·도지사는 제1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시·도지사가 제1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경우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4조제4항"을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제54조제1항"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제1항"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 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4조제1항"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제5항"을 "제54조제6항"으로, "말한다)는"을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0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 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 ·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으로, "제88조제3항"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실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광역도시·군계획"은 각각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 는 "관광지등"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보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를 "시·도의 조례로"로, "등이 갖추어져"를 "등을 갖추어"로, "지역일 것"을 "지역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 1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 2.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70조의2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2항 및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담여행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는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여행사로 본다. 이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은 종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정
	<u>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u>
	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
	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
	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이
	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
	<u>정·관리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
	<u>광부령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u>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
	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 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 ·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 · 관 광단지 · 관광특구 · 관광시설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 3.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 사고를 일으킨 경우
- 4. 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 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서 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 · 갱신 · 지정취소 및 전담여행 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개발) ① · ② (현행과 같음)

(3)	
제54조제1항이나	제
<u> 2항</u>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 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 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생략)

⑥ (생략)

<신 설>

<신 설>

- ④ (현행과 같음)
-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 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 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 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지정취소 및 면적의 변경 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시장・군수・구 청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

제53조(조사·측량 실시) ① <u>시·</u> <u>도지사는</u> 기본계획 및 권역계 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 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
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
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
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
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
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u>관"은 "시·도지사"로 본다.</u>
제53조(조사·측량 실시) ① <u>시·</u>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
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경우로
<u>한정한다)은</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u>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u>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하다)-
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u><신 설></u>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
광단지의 경우 관광단지개발자
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u>장·군수·구청장의 승인</u> 또는
변경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
다)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
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 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 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 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 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 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 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 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 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u>④ ハ・노시사 또는 시상・군</u>
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
<u> ই</u>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⑥</u> <u>제4항</u>
<u>⑦</u> 제1항 또는 제2항
제6항

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생 ⁷ 략)

②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 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 략)

⑤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 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u>제54조제4항</u>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
<u> 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u> <u> 한정한다)</u>
<u>제54조제5항</u>

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관 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 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 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 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 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 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②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

<u>제54조제1항</u> 또는 제2항
 ② <u>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u>
<u>같은 조 제4항</u>

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 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 다.

③ 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제4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 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 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
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
④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u>
<u>수·구청장은</u>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 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 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 하여야 한다.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기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시·도지사가 인·허가 등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 1. ~ 23. (생 략)
- ② 시·도지사(<u>제54조제5항</u> 따 ② --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u>수·구청장은</u>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6항
<u></u>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 ~ 23. (현행과 같음)
②제54조제6항

른 조성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 사를 <u>말한다)는</u> 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변경승인 또는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③ (생략)

제58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 지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u>말한다) 또는 시장·군수</u>
<u>· 구청장은</u>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준공검사) ①
<u>시·도지사 또</u>
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
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
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 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u>시 · 도지사</u>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 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 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90조ㆍ제100조 •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 사"로, "실시계획"은 "조성계 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계 획 또는 도시・군계획"은 "조 성계획"으로 본다.

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및 "국토교통부
<u>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u>
군수"는 각각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
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제 <u>52</u>
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
지로 한정한다)"으로, "제88조
제3항"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실시계획" 및 "도
시 · 군계획 · 광역도시 · 군계
획"은 각각 "조성계획"으로,
<u>"인가"는 "승인"으로, "도시·</u>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관광 저 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 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 외한다)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 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 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 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 수 · 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 ·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후단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u>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u>
세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1. (현행과 같음)
2. <u>시·도의 조례로</u>
<u>등을 갖추어</u>
<u>지역일</u>
<u>것.</u>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

3.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 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략)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
<u>, n , aa</u>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2.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
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
역일 것
_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
· 기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
지 아니할 것
<u> </u>

③ (현행과 같음)

조사·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조사·분석)
제1항 또는 제2항